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ОГНІ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69,890	14,450	0	0	
02월	169,890	14,450	0	0	
03월	169,890	14,450	0	0	
04월	194,120	16,510	0	0	
05월	194,120	16,510	0	0	
06월	194,120	16,510	0	0	
07월	194,120	16,510	0	0	
08월	194,120	16,510	0	0	
09월	194,120	16,510	0	0	
10월	194,120	16,510	0	0	
11월	194,120	16,510	0	0	
12월	194,120	16,510	0	0	
연말정산	238,770	17,550			
합계	2,495,520	209,490	0	0	
총합계				2,705,01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77,800	0
02월	77,800	0
03월	77,800	0
04월	77,800	0
05월	77,800	0
06월	77,800	0
07월	218,700	0
08월	218,700	0
09월	218,700	0
10월	218,700	0
11월	218,700	0
12월	218,7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0	
실업크	0	
합계	1,779,000	0
	총합계	1,779,00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개인용애니카 다이렉트자동차보			
보장성	202-81-45***	118Z1703360000	660520-*****	박영재	61,350
	삼성생명보험 (주)	무)간편가입보장보험			
보장성	104-81-26***	00002719657110024	660520-*****	박영재	992,4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Hi1			
보장성	102-81-32***	L01502079807	660520-*****	박영재	358,2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 (Hi140			
보장성	102-81-32***	L01415761423	660520-*****	박영재	349,20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	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	5***	119Z0533010000		660520-*****	박영재	462,930
	삼성화재해상보	.험 (주)	애니카다이렉트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		119E1878830000		660520-*****	박영재	126,730
	인별합계금액		2,35			2,350,81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	l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0	(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 (KDB Life Insurance Co . , Ltd)		(무)KDB돌려받는건	강보험2종(암			
보장성	408-81-07	7***	520097103	0003	691202-*****	이정엽	720,000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 (영업소)		(무)New 치아안심되	(무)New 치아안심보험1308(E형/			
보장성	116-84-00)***	LTD125005	7340	971015-*****	박원균	213,720
	삼성생명보험	(주)	무)간편가입유니버	 설종신보험			
보장성	104-81-26***		00041000002	060151	660520-****	박영재	1,028,400
	삼성생명보험 (주)		무)간편가입종합간병보험				
보장성	104-81-26	5***	00041000004714401		691202-*****	이정엽	303,12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생명보험 (주)		무)간편가입종합간병보험				
보장성	104-81-26	5***	00041000004	715344	660520-****	박영재	255,360
	삼성생명보험	(주)	무)건강생활	보험			
보장성	104-81-26	5***	00041000000	029191	691202-*****	이정엽	717,600
	삼성생명보험 (주)		무)뉴통합유니버설i	리빙케어종신			
보장성	104-81-26	5***	00005337654	310022	941018-****	박윤경	1,282,134
	삼성생명보험 (주)		무)스마트변액유니	l버설CI종신			
보장성	104-81-26	5***	00005337654310016		691202-*****	이정엽	1,400,000
	삼성생명보험	(주)	무)퍼펙트Up통합보험				
보장성	104-81-26	5***	00005337654310018		920719-*****	박성미	1,067,04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생명보험	(주)	무)퍼펙트Up통	통합보험			
보장성	104-81-26	5***	00005337654	310021	971015-*****	박원균	1,113,740
	교보생명보험	(주)	무배당교보내리사형	랑정기보험(3			
보장성	102-81-11	L***	206087011	1933	691202-****	이정엽	815,400
	새마을금고중앙회		치아치료비(· (환급)			
보장성	109-82-04***		9601108196759		941018-****	박윤경	300,360
	인별합계금액		9		9,216,874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자 식회사 (영업	배해상보험 주 업소)	(무)Chubb 치아안심	보험1901 (R			
보장성	116-84-00)***	LTD8870003370		920719-*****	박성미	409,320
	동양생명보험 (주)		(무)수호천사플	러스상해			
보장성	202-81-38***		113789951		920719-****	박성미	348,000
	인별합계금액				757,32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롯데손해보험격	주식회사	(무)롯데건강플러스건강보험(11				
보장성	104-81-30)***	200R20110009866		941018-*****	박윤경	65,640
	인별합계금액				65,64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에이스아메리칸화지 식회사(영업	배해상보험 주 업소)	(무)Chubb 치아충전치료보장보 험				
보장성	116-84-00)***	LTD9230024633		971015-*****	박원균	220,560
	인별합계금액				220,56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0-48*	현*****	일반	49,200
5-18-00*	뉴****	일반	167,130
3-92-00*	<u>*</u> *****	일반	207,700
4-39-00*	바****	일반	5,700
6-25-00*	□ ***	일반	9,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39,3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39,33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1-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13-19*	메***	일반	2,600
7-96-11*	지 ***	일반	3,300
7-90-24*	박*****	일반	69,400
7-40-00*	신***	일반	58,490
6-97-00*	연****	일반	310,900
4-39-00*	베****	일반	12,200
6-25-00*	□ ***	일반	9,400
1-14-00*	연****	일반	36,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03,19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03,19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2-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36-60*	허*****	일반	10,600
7-91-54*	안*****	일반	35,800
7-28-74*	센****	일반	3,900
3-90-60*	다***	일반	5,800
7-11-98*	무***	일반	5,600
2-06-50*	<u></u> ****	일반	10,700
7-15-56*	홈******	일반	3,700
2-90-68*	강*****	일반	61,300
9-91-00*	최 ****	일반	4,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42,2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42,2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3-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31-84*	수***	일반	3,100
5-24-11*	제***	일반	3,200
5-96-08*	한******	일반	7,200
7-90-24*	박*****	일반	51,600
5-92-12*	권*****	일반	6,400
7-96-12*	김*****	일반	29,000
1-14-00*	연****	일반	6,1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06,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06,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4-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92-40*	밝**** *	일반	906,700
8-14-00*	새***	일반	72,1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978,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978,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5-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교	***대학교	**7-82-03***	일반교육비	1,619,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619,000
현장학습비	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4,324,257	288,660	562,700	0	25,175,617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3,825,180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107,160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481,30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3,254,92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16,2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7,305,88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28,50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9,938,277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53,00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65,2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인별합계금액				25,175,617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18-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6,506,097	0	0	0	16,506,097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분 사 업 자 번 호 공제대상금액합계 상 호 종 류 120-81-54*** 신용카드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9,096,035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58,618 101-86-61*** 신용카드 (주) KB국민카드 일반 7,351,444 인별합계금액 16,506,09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203-44718373

(단위: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9-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44,600,542	748,120	984,200	369,990	46,702,85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12,743,983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57,03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5,573,05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618,60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653,57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도서공연등	155,53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3,561,25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27,00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233,75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57,43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203-4471837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9,216,939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3,505,32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02,52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96,880
인별합계금액				46,702,852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281,908	0	798,550	9,763	6,090,22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504,813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82,33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도서공연등	9,763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843,668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95,46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308,81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2,933,427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311,950
인별합계금액				6,090,221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0	0	496,240	0	496,24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496,240
인별힙	·계금액			496,2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153,350	0	0	0	5,153,35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5,150,350
직불카드 등	201-81-68***	(주) 국민은행	일반	3,000
인별힙	계금액			5,153,35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9,900	0	0	0	9,9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9,900
인별합계금액				9,90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203-4471837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4,581,068	25,300	62,400	46,860	4,715,628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2,800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4,565,668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25,300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46,860
직불카드 등	129-86-38***	(주) 이비카드	대중교통	62,400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12,600
인별합	계금액			4,715,628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390,996	0	177,800	42,900	5,611,696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375-88-00***	한국카카오은행(주)	일반	61,740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3,491,456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69,500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42,900
직불카드 등	201-81-68***	(주)국민은행	일반	4,000
직불카드 등	120-88-01***	(주)비바리퍼블리카	일반	1,833,800
직불카드 등	120-88-01***	(주)비바리퍼블리카	대중교통	108,300
인별합계금액				5,611,696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400	0	0	0	5,4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524-86-01***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일반	5,400
인별합계금액				5,40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영재	66052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6,291,838	783,270	0	0	7,075,108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4 79	조 근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211,330	539,710	347,630	182,89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28,410	2,891,164	308,720	832,690	6,291,838
		292,150	232,034	104,740	120,37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73,480	82,360	57,370	13,600		
	전통시장거래	129,820	0	52,980	122,130	783,270
		122,400	0	29,130	10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정엽	691202-*****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484,787	0	0	0	484,787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4 79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네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58,560	43,660	63,840	26,66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8,960	26,660	26,660	26,660	484,787
		41,750	29,007	55,910	46,46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성미	920719-*****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178,524	27,500	0	0	2,206,02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51,280	85,000	62,500	110,100	
현금영수증		646,100	139,780	85,200	107,430	2,178,524
		203,334	111,700	145,000	431,10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24,000		
	전통시장거래 3,	3,500	0	0	0	27,50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윤경	941018-*****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261,654	19,000	0	0	1,280,65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22,920	95,570	95,570 157,560 97,990		
현금영수증		18,258	180,230	143,820	91,158	1,261,654
		43,558	59,190	110,100	141,30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전통시장거래	9,000	10,000	0	0	19,00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원균	971015-*****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66,838	0	0	0	866,838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종류	조리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28,060	28,060	66,870	88,450	
현금영수증 일반:	일반거래	88,450	88,450	88,450	88,450	866,838
		88,450	88,738	64,020	60,39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